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17

발의연월일: 2020. 7. 9.

발 의 자:전봉민·김도읍·이주환

황보승희 · 안병길 · 조경태

정동만 • 구자근 • 양금희

박성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매년 의무 채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2022년까지 신규채용인원 대비지역인재 채용인원 목표비율을 30%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해마다 지역인재 채용비율과 채용인원은 매년 증가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지역인재 채용률의 편차가 크고,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진입은 여전히 높게만 느껴져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혁신도시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지역인재의 채용율을 더 높여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재화·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인재 의무 채용비율을 신규채용인원 대비 100분의 50 이상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연도별 우선 구매 촉진계획을 국토

교통부장관이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매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 등).

법률 제 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본문 중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매년 신규 채용인원 대비 100분의 50 이상의 비율로"로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 비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5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통보"를 "통보, 제3항에 따른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확인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우선 구매에 관한 연도별 목표를 포함한 우선 구매 촉진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규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
역인재 채용 등) ① 이전공공	역인재 채용 등) ①
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	
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	
한 지역(이하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	
한다) 또는 고등학교(「초·중등	
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한	
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이전공공기	
관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u>채용</u>	<u>매년</u>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u>신규 채용인원 대비 100분의 50</u>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u>이상의 비율로</u>
한다. 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	

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 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 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 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다.

② ~ ⑥ (생 략) <신 설>

구매) ① • ② (생 략)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이 이전하는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 ② ~ ⑥ (현행과 같음)
- ⑦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등의 채용 비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5(이전공공기관의 우선 제29조의5(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구매계획과 구매 실적을 확인하고 이전공공기관 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 의 의견을 들은 후 우선 구매 에 관한 연도별 목표를 포함한 우선 구매 촉진계획(이하 "우 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u>4</u>				
	통보,	제3항에	따른	우선